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2가단2762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원상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2. 16.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2. 5.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기과 2022. 5. 26. 접수 제607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이성용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D에 있는 E아파트 F동 제18층 G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H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3층 공동주택(아파트)

지1층 92.6848㎡

1층 241.2269㎡

2층 390.4764㎡

3층 403.9164㎡

4층 403.9164㎡

5층 390.4764㎡

6층 390.4764㎡

7층 403.9164㎡

8층 403.9164㎡

9층 390.4764㎡

10층 390.4764㎡

11층 403.9164㎡

12층 403.9164㎡

13층 390.4764㎡

14층 390.4764㎡

15층 390.4764㎡

16층 390.4764㎡

17층 390.4764㎡

18층 390.4764㎡

19층 390.4764㎡

20층 390.4764㎡

21층 390.4764㎡

22층 390.4764㎡

23층 185.066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8층 G호

철근콘크리트구조

72.99㎡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남양주시 D

대 155334.8㎡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비율 : 1. 155334.8분의 48.8105. 끝.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다수의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던 소외 C에 대한 채권 일체를 2009. 4. 10. 양수 받은 채권자입니다(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1, 갑제2호증의2 각 참조). 한편, 피고는 소외 C과 동거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2. 5. 25. 자로 소외 C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갑제3호증 참조).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상기 채권양도 이후, 소외 I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480074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21. 7. 7. 자로 『피고는 원고에게 79,356,544원 및 그 중 18,887,136원에 대하여 2021. 2. 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동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갑제4호증 참조).

현재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피보전채권의 잔존채권액은 다음 표 기재금액과 같습니다.

종류	금액(단위 : 원)	비고
원금	18,887,136	일부 상환에 따른 잔존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60,469,408	2021. 2. 4까지 발생 이자 및 지연손해금
	3,738,101	2021. 2. 5부터 2022. 9. 29까지 발생 이자 및 지연손해금

계 (청구금액)	83,094,645	
-------------	------------	--

3. 사해행위의 존재

가. 관련 법리

대법원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라고 판시한바(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채무자가 무상양도에 해당하는 증여를 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사안의 경우

소외 C은 피고와 2022. 5. 25.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제3호증 참조). 소외 C이 2022. 5. 25.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마쳐줄 당시 소외 C은 원고에 대한 판결문상 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았을 때, 소외 C이 2022. 5. 25.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마쳐줄 당시 소외 C은 무자력 상태였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소외 C의 증여행위로 인하여 소외 C의 채무초과상태가 야기되었거나 적어도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C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채무자의 사해의사 존재

대법원은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위 판시내용에 의하면, 채무자의 증여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경우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과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은 추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소외 C은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와 2022. 5. 25. 자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소외 C과 주소지를 같이하는 동거인으로 소외 C의 채무초과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았을 때, 소외 C의 증여행위로 인하여 소외 C의 채무초과 상태가 야기되었거나 적어도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술한 대법원의 판시 내용에 의하면, 소외 C이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소외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과 피고가 악의라는 점은 추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소외 C이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소외 C에 대한 원고의 채권은 이미 발생한 사정으로 소외 C은 원고의 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소외 C의 경우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실 또한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5. 소결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모든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